

제4회 매니페스토 청년정책 평가단

2차 모임 자료집

- 20대 총선 정당별 청년정책 평가 -

2016. 3. 26

<순서>

순서	내용	담당	
1부: 청년정책평가단 <청년정책 Contest> (15:10~15:50)	19대 총선 돌아보기	윤성진 평가위원	
	청년이 뽑은 정당별 청년공약	새누리당	전인영 평가위원
		더불어민주당	오희현 평가위원
		국민의당	허다인 평가위원
		정의당	김기민 평가위원
		그 외 원외정당	문모은 평가위원
지역구 후보가 말하는 청년공약	김효은 평가위원		
2부: Open Table <청년이 느끼는 청년정책> (16:00~16:45)	Topic 1. "내겐 최고!"	참가자	
	Topic 2. "내겐 최악!"	참가자	
	Topic 3. "이건 왜 없니?"	참가자	
3부: 평가 <청년정책 평가 및 최고의 청년정책 선정> (16:45~17:00)	Share 1. 평가표 작성	참가자	
	Share 2. 최고의 청년정책 투표	참가자	
수료증 수여 및 마무리			

1부: 청년정책평가단 〈청년정책 Contest〉

<청년정책 Contest 순서>

내용		담당
19대 총선 돌아보기		윤성진 평가위원
청년이 뽑은 정당별 청년공약	새누리당	전인영 평가위원
	더불어민주당	오희현 평가위원
	국민의당	허다인 평가위원
	정의당	김기민 평가위원
	그 외 원외정당	문모은 평가위원
지역구 후보가 말하는 청년공약		김효은 평가위원

1.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청년 공약

구분	정책명	내용	비고
일자리	청년창업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젤투자펀드 확대,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일자리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제도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재형저축 마련 및 세제지원 	
여성	연령별 맞춤형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대 커리어개발센터 업그레이드 30~50대 새일센터 확대 60대 커리어코칭제도 도입 	
여성	워킹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사립보육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복지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수 줄이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일자리	근로시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제조업 임금 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 또는 주10시간으로 축소 중소기업 교대제 개선시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촉진 등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이자 3.9% → 2.9%로 인하 학점 및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대학생	대학생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으로 대학생 주거 걱정 덜기 	
보육	출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비용 국가 부담 	
보육	보육·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13년부터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및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정신보건센터 확대 등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 	

2.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청년 공약

구분	정책명	내용	비고
일자리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40시간제 확대적용과 주5일 근무 정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근로감독의 강화를 통한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 및 엄격한 법집행 / 초과노동시간 제한(주 12시간 한도)에 휴일특근 포함(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가능)) •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최대근로시간제: 어떠한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는 안 되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설정. 프랑스의 경우 60시간 /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하루의 근로를 종료한 이후 다시 근무를 재개하기까지의 시간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 독일의 경우 18세 이상은 11시간, 18세 미만은 12시간)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 축소하고, 천재지변이나 사회경제적 위급 상황과 같은 엄격한 사유에 의한 특례 제한 •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 업무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 •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 개편 지원, 서비스부문의 영업시간 단축 •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집중휴가기간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필요 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검토
일자리	청년고용의무할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 할당을 의무화 • ‘청년고용부담금제’를 신설하여 3년 평균 청년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영업사정이 있는 경우 부담금 면제 등 차등 부과(‘청년고용부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고용촉진지원금’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2017년까지 시한 연장
일자리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에 35만개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보건의료·노인 건강·요양:22만개, 보육:4.4만, 교육:7만, 노동 및 고용지원 서비스:4천, 공공안전: 1.2만)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대한 표준임금기준 마련 • 총액인건비제 개선 및 공무원 직제에 ‘사회서비스직’ 신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임용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일자리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조항 신설 - 일시적·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계약 허용 • 파견법에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제로 개정 •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제도, 일자리나누기 지원, 고용유지지원사업을 확대·활용하여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파견근로자 및 사내 하청근로자를 사업주(원청회사)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2년간 한시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구분	정책명	내용	비고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 • 파견법,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주체 및 기간, 비교대상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시정 신청주체 : 당사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이외 그가 속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상급 단체로까지 확대 - 차별시정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를 인지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 - 차별판단 비교대상: 과거 동일 유사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포함 • 산별교섭 보장과 협약 구속력 확대를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정에서의 차별해소 • 근로조건, 취약계층 고용현황, 공정거래현황 등 고용지표를 매년 공시하는 고용공시제 도입(우수기업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공시제 도입 및 공정거래 기업에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조달입찰 자격 우선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일자리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개정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인사·재정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위원선정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 •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및 감액 대상 규정을 폐지함. 단, 중증 장애인의 고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허용 •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추가로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 업정한 감시단속을 통해 탈법적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법」 개정
일자리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실업자,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 고용보험가입사실이 없는 미취업 청년, 자영업 폐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실업부조금(구직촉진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법제화 - 일정한 가구소득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저임금의 80%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 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부터 지급자격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자 구직촉진법」 제정 또는 「고용보험법」에 구직촉진수당 신설

구분	정책명	내용	비고
일자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과 지원대상 사회보험 확대(산재보험, 건강보험 포함) •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로부터 최장 360일까지로 확대 -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을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단체 역할 강화 및 대표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 사 정 공 '4자 동수'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를 노 사 정·공 '3자 동수'로 위원회구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개정
일자리	정리해고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집단해고 제한 • 해고 회피노력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순환휴직, 전환배치, 전직 등 계속 고용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다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부과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노사합의를 의무화 •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상대방과 협의 내용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고 회피 노력과 협의결과가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신설 • 피해고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용 우선권에 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피해고자의 재고용 우선권 신청절차와 사용자의 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근속년수에 비례한 손해배상의무의 신설 등 -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시행령에 보완 •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개정
일자리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고교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실습과 교육의 질을 향상 •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 확대 • 고졸자를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구분	정책명	내용	비고
보육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금액을 현행 정부지원 단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지원대상은 05세 아동 전체)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3~5세 10만원 :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 - 단,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될 경우 2015년 이후 양육지원수당에 대해 평가 후 지원 재검토 	
보육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보육시설은 연간 400개소를 신규 설치,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2,000개소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 연간 100개소를 증축,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500개 증축 • (설치방안) 민간보육시설 또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 하는 방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 공급된 민간보육시설과 공급경쟁을 가열시키지 않으면서 민간과 확대되는 국·공립시설이 상생하는 방식 	
보육	보육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육아지원종합센터’ 신규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50개(2013년은 25개) 육아지원종합센터 신축, 총 249개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신규 설치가 어려울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정보센터등의 기능을 확대 • 보육시설 대상 지원, 관리 : 지역내 보육시설 관리감독, 평가인증 조력, 대체 교사 지원 등 • 부모 양육 지원, 상담 서비스제공 : 출산 양육정보 제공 및 상담, 아동도서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 • 운영 인력 : 센터장 1인 전문요원 4인 보육교사 3인 기타 운영인력 2인 등시설 당 10인(서울시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산하 육아지원센터 참조) • 현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의 실사 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또는 참관 제도 도입 및 평가인증 후의 사후관리제도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민간보육시설에까지 의무화하고, 민간 운영위원의 사후 관리 참여, 인증평가 이후 사후보고서 작성시 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 지자체의 공적 관리(현행 지도, 명령 등) 감독 기능 강화 : 보육시설 안전 위생 관리 등, 부문별 점검 이용자 또는 시민 참여 시스템 도입 • 평가인증 등 육아지원종합센터의 서비스 질 관리 결과와 재정지원(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연계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 	

구분	정책명	내용	비고
보육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신생아·영유아 돌보미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아 자녀가 있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지원정책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돌보미 서비스 비용을 차등 지원 • 시간제 보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 기초단체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200개 기초단체의 거점(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지자체 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 기존의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 국·공립 보육시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전담 교사 배정 후 시간제 보육 실시 	
보육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정액 50만원에서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함 (최저 50만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 • 아버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 10세 미만 자녀 입원시 임시휴가 도입 : 연간 10일 미만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보육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의 적용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적용기간은 12개월로 인정함 • 둘째 아이부터는 24개월, 셋째 아이는 48개월, 넷째 아이는 50개월로 연장하고, 그 이상은 총 50개월을 상한선으로 함 	
보육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여하에 관계없이 불임·난임부부 검사 및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1차적으로 소득하위 50% 가구에 실시 - 배란촉진제 복용 등 가임을 위한 의료비 지원 -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5회까지 전액 국고에서 지원 	
보육	고령·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산모를 대상으로 '필수검사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산모 임신전 관리비용 추가 지급 • 고위험 산모 미숙아 센터와 지역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고령 및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고위험 분만·미숙아 치료센터 지정(광역 의료권 당 1개소) - 지역 고위험 분만·미숙아 치료센터(지역의료권 당 1개소) 	

구분	정책명	내용	비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 •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 • 대학별 ‘반값등록금’ 지원은 국·공·사립대학별,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 기준 결정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액상한제’ 도입 •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 • 반값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학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법」 등 개정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제도의 금리를 낮춰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완화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인 ICL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통합하여 ‘등록금 후불제’로 일원화 • 반값등록금이 추진되면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 학자금대출 수요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를 저리로 운영 	
일자리, 여성	가사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지급 • 파견 및 사내하청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도입 •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 • 저임금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포함) 지원 확대 • 가사관리사, 간병사 등 30여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정의에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II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주거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 공급량 확대. 연도별 실수요를 반영하여 공급량을 현행 1만호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 고시원을 대체 할 공공원룸텔을 연 5천호씩 공급하여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가구에 지원 • 대학별 기숙사 공급확대.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강구해서 연간 1만명분 5천실 주거공간을 제공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젊은층 주거안정 기여

◆ 정당 개요		접수번호	새누리당-01
작성자	전인영	전화	010-7456-7629
정당명	새누리당	E-mail	dethink@hotmail.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1. 공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 공급 ● 입주계층: 젊은층 80%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20% = 건설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노인 및 주거급여수급자 ● 임대료: 주변대비 60-80% ● 거주기간: 6년, 10년(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 되거나 결혼하는 경우 및 사회초년생이 결혼하는 경우) ● 편의시설: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역주민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17년까지 14만호 공급 계획, 현재 9만호 확정 		
	2. 선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문제는 고대부터 오늘까지 인류에게 항상 중요하며 근원적인 문제 ● 높은 주거비 때문에 생기는 빈곤 ● 좋지 않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병 차단 및 안정감 고양 		
	3.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부지마련 및 건설비용을 위한 지속적 재정 분담 여부가 의심스러움 ● 행복주택 건축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산물인지 의심스러움 ● 고정적 비용이 아닌, 주변 시세에 따른 할인 임대료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저렴할지 의심스러움 ● '현재 9만호 확정'을 통해, 새누리당의 실제적 의지 확인 		

벤처장학제도로 취업까지 확실하게 보장

◆ 정당 개요		접수번호	새누리당-02
작성자	전인영	전화	010-7456-7629
정당명	새누리당	E-mail	dethink@hotmail.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1. 공약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장학제도로 확실한 취업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 • 16년 벤처단체에서 시범운영 후, 17년 본격 도입 • 벤처기업과 정부 합작으로 소요자원 조달 		
	<p>2.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 직업은 돈벌이의 문제가 아닌 존재론의 의미도 지님 <p>3.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벤처에 취업함, 장기적인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심스러움 ● 한 학생이 고등학교 혹은 학부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 까지 생존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 자금력과 조직력을 확보한 대기업과 연계함이 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함 ● 일반고 및 인문계 대학 재학생을 배제한 정책 ● 시범운영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스러움 ● 단기간 준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효율적일지 의심스러움 ● 정부와 합작할 벤처기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지 의심스러움 		

청년 국제인턴 확대

◆ 정당 개요		접수번호	새누리당-03
작성자	전인영	전화	010-7456-7629
정당명	새누리당	E-mail	dethink@hotmail.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1. 공약 내용</p> <p style="margin-left: 20px;">- 청년 국제 인턴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국제경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재외공관 및 해외지사들이 고학력의 인력 활용 가능 • KOICA를 포함한 재외공관과 무역관에 파견하는 청년 인턴 수 확대, 급여와 주거 지원 • 해외동포기업과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 민간 기업 해외 지사에 청년 인턴을 파견함으로써, 현지사정에 정통한 청년 전문가 양성함을 장려 • 워킹홀리데이 및 비자쿼터 확대를 통해 청년 해외진출 확대 <p>2.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 직업은 돈벌이의 문제가 아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론의 의미도 지니고 있음 <p>3.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지, 재외공관과 해외지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지 구별하기 애매함 ● 국적이 외국인인 해외동포기업과 연계를 어떻게 이루어낼지 의심스러움 ● 국적이 외국인인 해외동포기업에 취직한 청년 보호에 대한 대처 미비 ● 인턴이 일을 함으로 지닐 수 있는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 기업 해외 지사에 파견한 청년 인턴 정직원 보장 필요 ●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해외진출 확대의 실효성 검증 필요 ● 언어 및 한국을 떠날 조건을 충족한, 조건부 청년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사병 월급인상 및 처우개선

◆ 정당 개요		접수번호	더불어민주당-01
작성자	오희현	전화	010-2074-3260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E-mail	godips1006@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 정책 취지(=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병의 학력비율을 볼 때 고졸 2%, 대재 78%, 졸업 0.2% 등으로 사병 대부분 제대 후 다시 높은 학자금을 부담하며 복학하게 됨. - 참여정부 시기, 사병 복무자들의 월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국방개혁 2020' 완성 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 월 1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병영시설 등 복지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고, 열악한 의료시설 및 단기복무 군의관 위주의 의료인력 운영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p>○ 정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병 월급 인상 - 폭력 등 군대내 인권문제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군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함 <p>○ 정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병월급 단계적으로 月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 제대 시 퇴직금 제도 도입 -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 확대 - 군 응급전문인력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 사병 급식비 단계적 인상, 사병 생활관 등 조기 개선 추진 -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격오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셔틀의무버스 운행 - 복무기간 중 취득할 수 있는 대학 교육학점을 현행 9학점에서 15학점으로 상향 추진 <p>○ 소요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예산에서 조달가능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사병들의 월급은 인상이 꼭 필요함 -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 확대는 질병이나 사고 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병이나 사고까지 확대되는지 궁금함 - 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기 위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이나 절차를 까다롭지 않게 만들어야 함 - 군인권보호관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면 독립성이나 몇 명당 지정되는지, 구체적인 업무와 선발방식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청년창업환경 개선

◆ 정당 개요		접수번호	더불어민주당-02
작성자	오희현	전화	010-2074-3260
정당명	더불어 민주당	E-mail	godips1006@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 정책 취지(=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5%를 기록해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고, 실업자 수도 56만명에 달해 1999년 8월(56만 4천명) 2001년1월(60만2000명)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규모임. 청년고용률도 OECD평균(50.8%, 2013)보다 10%낮은 수준(41.5%, 2015) -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 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 조사결과(‘15.5), 창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하는 기술형 창업(기회형 창업)보다 일반서비스 창업(생계형 창업)에 더 관심을 보였음 - OECD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창업 유형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로 나타나 조사대상 29개국 중 가장 높았고, 반대로 기술 창업은 21%로 최하위에 머물렀음 		
	<p>○ 정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청년창업 성공율을 제고 		
	<p>○ 정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확대 - 모태펀드의 출자분야에 청년계정 신설 - 펍랩 지원 및 조성 - 1인 스마트 창업기업 육성 지원 		
	<p>○ 추진계획 및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개선 공약은 2020년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 모태펀드의 출자마련은 중진기금(중기청)·문산기금(문광부)·특허회계(특허청) 등의 출자를 통해 2015년 기준으로 총 2조 2,261억원 조성 - 펍랩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공공특허를 무상 제공하거나 연계 지원 - 1인 스마트 창업기업 육성 계획은 앱·SW융합·콘텐츠 분야 등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예비 창업팀 발굴을 통해 지원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청년 창업의 지원자격이 현실성 있게 계획되고, 지원받을 수 있다면 초기 사업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함 - 시제품 제작에만 초점을 맞추는 펍랩이 아니라, 확장해서 법률이나 창업아이템 관련 상담도 가능하면 막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적은 청년창업가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1인 스마트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다면 낮은 초기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통해 지원할지 알 수 없어 아쉬움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정당 개요		접수번호	더불어민주당-03
작성자	오희현	전화	010-2074-3260
정당명	더불어 민주당	E-mail	godips1006@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 정책 취지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여전히 심각함 - 통계청에 따르면 만 16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 세대 가운데 주거빈곤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139만 명임(KBS뉴스, 2015.12.14.) -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내집마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기 위함 		
	<p>○ 정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청년 주거를 획기적으로 개선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 2~4룸식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5만호, 장기적으로 10만호 수준 공급 - 신혼부부용 스마트주택(소형, 인텔리전스)을 매년 5만호이상 공급 - 신혼부부 주거지원요건 대출액 현실화, 자격요건 완화 추진 - 현재 5% 수준(106만호)인 공공임대 재고량을 향후 10년간 13% 수준(250만호)으로 확대 		
	<p>○ 소요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거 쉐어하우스 5만호 공급: 대략 1호당 7,500만원, 매년 1조 5000억 지원 - 재원조달 방법: 국민연금 활용,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임대주택 연간 10조원 활용 		
	<p>○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주거지원요건의 대출액 현실화와 자격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데 자세한 계획이 공급하며, 신혼부부가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지원 또한 함께 개선 되었으면 함 -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지원이 그림의 떡이라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첫째, 집의 검증 기준이 까다롭고, 둘째, 현실적으로 대학가에서 전세를 찾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 그러기에 현재 있는 지원이라도 제대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집 주인은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받는 장점이 하나도 없으므로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들이는 기회비용이 크므로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전세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책 수혜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부족함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이미 민생·복지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인데다 뚜렷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옴 		

후남형 청년구직수당제 도입

◆ 정당 개요		접수번호	국민의당-01
작성자	허다인	전화	010-6290-3531
정당명	국민의당	E-mail	hdi0525@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정책 취지(=현황 및 문제점) -청년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어섰고, 각종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일회성 일자리에 그치고 있음.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구직기간은 8.3개월로, 취업 준비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음. 고용보험에 청년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50만원씩 6개월 간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업 후에 납부하는 제도 도입하고자 함.¹⁾</p> <p>정책 목적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금전적인 지원 사격. 기대효과로 구직과정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여 경제적 어려움 완화, 취업 후 납부를 통해 재정지출 최소화.</p> <p>정책 내용 ‘청년희망 프로젝트 : 공정한 출발’의 세 가지 실천 방향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 지원’의 구체적 하위 항목 공약. 청년 10대 공약 중 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 간 50만원의 구직급여 지급. ▶ 수급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구직자 중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자. ▶ 수급자들은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 납부(2.5%). ▶ 후남 상한액은 250만원. ▶ 25세 이상 구직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25세 - 34세까지 우선적용). 청년구직수당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청년 구직자로 확대해 월 1만 3500원의 보험료는 취업 후 후불로 내게 하되 구직급여는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구 소득이 하위 70% 미만인 만 2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주자는 것. ²⁾ 후남형 청년구직수당에 들어가는 소요 재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 8,000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 ³⁾ 장병완 정책위원장은 (청년구직수당의 경우) 1200억 원 정도 견적이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고 밝힘.		
	<p>정책 평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취업자·졸업예정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활동비지급)’과 비슷하다. 이 지적에 대해 앞서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원장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재정사업을 펴는 것이지만, 우리 공약은 고용보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무상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조금 더 생각하고 반영한 점이 보인다.</p> <p>-다만 몇몇 이들에게 취업 후 4년 동안 꾸준히 갚아야 추가적 비용이 소량이라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심적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이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을 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2015년 기준 10조 7천억에 달하며, 2010년에 비해 3배가 증가됐고, 학생 1인당 빚은 704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청년들은 경제위기, 부채증가로 학자금을 갚아가는데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구직급여까지 받게 된다면 달콤함에 대한 대가를 미래에 갚는 심적 부담이 배가된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현재 구직난에 처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감도와 시급성에 다소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자 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현실성의 점수로 보통(10점)을 주고자 한다. 효과를 차후에 어떻게 파악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p>		

1) 국민의당 10대 청년 공약 발표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일보, “국민의당, ‘구직수당300만원’ ‘대학입학금 폐지’ 10대 청년공약”
 3) 서울경제, “청년수당 전쟁’ 총선으로 번지나”

대학 입학금 폐지/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 정당 개요		접수번호	국민의당-02
작성자	허다인	전화	010-6290-3531
정당명	국민의당	E-mail	hdi0525@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정책 취지(=현황 및 문제점) -대학교별 신입생에게 부과하고 있는 입학금은 산정기준이 없거나 모호하고 사용처가 불명확하여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특히 대학교 입학금은 학교별로 최대 103만원까지 상이하게 징수하고 있어 학생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출처가 불분명한 입학금 징수를 폐지하고 대학등록금 심사 제도를 통해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사용되는지 검토하고자 함.</p>		
	<p>정책 목적 대학생 신입생 및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대학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p> <p>정책 내용 ‘청년희망 프로젝트 : 공정한 출발’의 세 가지 실천 방향 중 하나인 ‘청년학비 경감’의 구체적 하위 항목 공약. 청년 10대 공약 중 하나.</p> <p>▶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11조 개정을 통해 입학금 폐지</p> <p>▶ 대학예산의운용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대학,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p>		
<p>정책 평가 -학생들은 많게는 등록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입학금(181개 사립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72만원)을 내면서도 왜 내야 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다. 올해 3월 8일 중앙일보 12면 기사에 따르면,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 기준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 항목에 포함돼 있다.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에 대해서는 용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각 대학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책정해 입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은 “대학들이 근거 없이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뒤 학교 운영 전반에 이를 사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입학금도 등록금처럼 개별 항목으로 분리해 산정 근거부터 지출 내역까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학금 축소가 아닌 폐지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당장 폐지하도록 개정 이, 법안 통과가 가능할까? 김주호 사무국장의 말대로, 입학금도 등록금처럼 개별 항목으로 분리해 산정 근거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검토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이면 어떤가. 국공립 대학교의 평균 입학금은 14만원이다. 반면 사립 대학교의 평균 입학금은 72만원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 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의 취지엔 공감은 가지지만 효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 또한 등록금 심사제도에 동의하고 공감하며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이 없어 아쉽다.</p>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 정당 개요		접수번호	국민의당-03
작성자	허다인	전화	010-6290-3531
정당명	국민의당	E-mail	hdi0525@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정책 취지(=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해마다 20조원 달하는 청년 관련 예산 수립과 집행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감시·감독체제가 결여됨. ● 정책의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청년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p>미래세대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미래세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함.</p> <p>정책 목적</p> <p>기대 효과로 청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또한 파생적 기대효과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공동체 회복 등 청년들의 능동적인 역할 강화를 예견.</p> <p>정책 내용</p> <p>‘청년희망 프로젝트 : 공정한 출발’의 세 가지 실천 방향 중 하나인 ‘청년권익 보호’의 구체적 하위 항목 공약. 청년 10대 공약 중 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차원의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청년의 학습권보장, 능력개발, 고용 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청년 공간 마련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권리보호에 관한 미래세대발전기본법 제정. ▶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설치. ▶ 일자리, 주거 등의 청년 문제를 한 번에 접근해결할 수 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p>정책 평가</p> <p>-정책 취지와 목적 그리고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 잘만 구축된다면 청년과 국가의 유대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의 홍보와 빠른 인지 후 피드백 반영돼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다만 앞으로 One-Q 청년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이행해 긍정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보고하고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실성은 아직 증명치 못하는 부분에, 자세한 시행 계획이 실려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타 평가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p>		

국가표준등록금 제도 도입

◆ 정당 개요		접수번호	정의당-01
작성자	김기민	전화	010-5040-4509
정당명	정의당	E-mail	nocturnal135@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 정책 제안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과도하여 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 현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지원 총액이 적을뿐더러 지원 범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현 등록금 금액은 각 대학이 자의적인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며, 이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p>• 정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가처분 소득 등을 기준으로 국가표준등록금을 산정한다. (2015년 기준 350만원) - 해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한다. - 고등교육의 최종 수혜자 중 하나는 기업이므로 대기업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즉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징세 등의 방안을 통해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한다. <p>• 정책 평가</p> <p>* 긍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산정하고 학생 부담금액은 해당 금액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 -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기업이 등록금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일부 사립대학의 재단 적립금 확보 및 자금 유용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등록금 책정을 방지할 수 있다. <p>* 부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표준등록금이 350만원이라는 점에서 국가표준등록금 제도 도입 자체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 기업의 고등교육 비용 분담 의무화는 대학의 기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PRIME 사업 등을 통한 학과 통폐합의 근거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정당 개요		접수번호	정의당-02
작성자	김기민	전화	010-5040-4509
정당명	정의당	E-mail	nocturnal135@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 정책 제안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느끼는 임대료 부담이 크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p>· 정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임대업자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임대업자로 등록된 임대업자들은 공정임대료를 준수해야 한다. - 공정임대업자에게는 주거환경개선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p>· 정책 평가</p> <p>* 긍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중 세제혜택은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업자에게는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저항이 적고 예산 편성에서의 어려움 또한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거 문제는 청년에게 있어 중차대한 사안이다. 임대인이 임대료 책정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년 개인 차원에서는 주거비 지출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지출 가능한 주거비가 적다면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삶의 질 악화와 직결된다. 공정임대료 제도는 정부가 임대 가격 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또 인센티브 중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은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 높은 임대료는 지방 출신 학생들의 서울 진출에도 걸림돌이 된다. 서울로의 인적 자원 집중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은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 높은 주거비로 인한 서울과 지방 간 격차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p>* 부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이 한 번 자리를 잡을 경우 학생들은 공정임대업자들을 선호할 것이고 공정임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업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가격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임대료 제도는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책 도입 초기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현 임대료와 큰 차이 없는 가격이 책정될 경우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청년들의 호응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 가능한 금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임대료 시세와 공정임대료 간 가격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임대업자의 손실이 증가하여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거나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업급여 확대 정책

◆ 정당 개요		접수번호	정의당-03
작성자	김기민	전화	010-5040-4509
정당명	정의당	E-mail	nocturnal135@naver.com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 정책 목표</p> <p>-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쁜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다.</p>		
	<p>* 정책 선택 이유</p> <p>- 다양한 일자리 · 노동 정책 중 왜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추가한 항목입니다.</p> <p>- 정의당 일자리 · 노동 정책의 기본 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 환경 개선 정책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정책, 그리고 단기계약직 형태인 공공기관 행정인턴을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p> <p>- 하지만 결국 근로 환경과 처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용주이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고용주에게 정책적으로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로 환경을 감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 아래 정책 평가에서 서술한 내용대로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고용주의 갑질에 이직이라는 대항책을 제시함으로써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실업 급여 확대 정책이 비록 정책 규모는 작을지라도 정의당 일자리 · 노동 정책을 대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정책 평가</p> <p>· 긍정적 측면</p> <p>- 직장을 자주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새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실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현실적으로 이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당장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직을 선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p> <p>- 당장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뿐더러 그 결과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전체적인 노동환경 개선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p> <p>· 부정적 측면</p> <p>-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만 채우고 사직서를 내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단위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침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p>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 정당 개요		접수번호	그 외-01
작성자	문모은	전화	
정당명	복지국가당	E-mail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실업률 9.2%로 급증 - 졸업 후 구직기간 평균 12개월, 구직활동으로 인해 청년 빈곤률도 급증 - 취업 정보의 분산과 공정성 없는 민간 구직 사이트들로 인한 구직 정보 취득제한 - 대학과 민간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취업 담당관, 대학 청년고용센터로 인해 고용 지원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홍보 미흡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시점까지 청년고용수당 제공 ○ 구직 시기까지 청년고용담당관의 1:1 취업 알선서비스 제공 ○ ‘자브로(job으로)’ 사이트 운영으로 공공 고용 알선 지원 ○ 인력, 교육, 소득보장의 통합적, 체계적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 및 고용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법에 명시 ○ 구직 시점까지 청년 소득 보장 - 구직 활동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청년고용담당관 알선서비스) 참여 조건 - 졸업 후 구직 기간 동안(평균 12개월) 월 60만원 지급 - 각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 (직업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 시 카드할인 혜택 부여) ○ 구직 시기까지 청년고용담당관의 책임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노동부 및 산하 기관 소속 청년고용담당관이 고용지원센터 및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근무, 1:1 매칭을 통해 책임지고 일자리 소개 및 지속적인 구직활동 지원 - 고용 알선, 직업 교육 계획 수립 및 고용되기 전까지의 청년 소득 보장 등을 담당 ○ 공공 구인 구직 사이트 ‘자브로(job으로)’ 운영 -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익 및 시민단체 등의 구인/구직 현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구축 -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익 및 시민단체들의 구인/구직 현황 자료 정기적 파악 및 근로 감독과 연계한 실태 점검 ○ 인력, 교육, 소득보장의 통합적, 체계적 연결서비스 구축 -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청년 고용 서비스, 자브로 사이트 운영을 중앙정부(지자체 지원)로 공공 단일화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고용 지원 서비스망 구축 <p>■ 이행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준비 후 2017년부터 시행 <p>■ 재원조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재원 : 총 2조 1,500억 원/년 + α - 청년고용수당 : 1조 1천 6백억 원(2015년 기준 미취업자 16만명, 월60만원 지급) - 청년고용담당관 임금 : 99백억 원 * 청년고용담당관 1명당 연간 청년 구직자 100명 담당 시 최소 필요 인원 1,600명 * 전국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1,974개), 읍 단위(138개) 등 2,112명과 고용 지원센터 추가 배치 등 2,500명 * 2015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330만원 기준 - 자브로 사이트 개설 : 추후 산정 ○ 재원조달방안 - 현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70억 8,300만원을 전용 - 비과세 감면 제도 단계적 철폐를 통해 고용지원을 위한 세수 마련 		

◆ 정당 개요		접수번호	그 외-02
작성자	문모은	전화	
정당명	복지국가당	E-mail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1로 전 세계 190여개 국가(UN 회원국 기준) 중 홍콩(1.20), 마카오(1.19) 등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
- 2012년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 중 23.7%는 보육비 지원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
-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1)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 2) 취직과 고용유지에 대한 어려움, 3) 양육지원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나타남.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등 2005)
- ⇒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육아지원제도의 미비’에 기인.
- 현행 출산·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금 근로자)을 대상으로 실시
- 양적 지원 확대(8.3조원)에도 불구하고 공공 인프라·평가인증·교사지원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시설(보육료)지원에 집중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나 시설수가 적어 대기 아동 수가 매년 증가(2011년 6월 기준 현원 14만 117명, 대기 아동 16만 8,153명)
- 2012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5.1%,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 22%, 2012년 OECD국가 평균 공립 유치원 수용률 68.6%인 OECD 국가의 1/3수준(보건복지부, 2014보육통계)
- 보육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당수 보육교사는 비정규직
- 보육교사의 1인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28시간인데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4%에 불과
- 보육교사의 기본 급여는 약 131만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임금은 122만원(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교사 실태 조사」)
- 보육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목표

- 육아 지원사업의 공공성 확대
-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제공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
- 육아지원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행 방법

- 양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법으로 규정
-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국가 보장
- 고용보험의 “가족보험(가칭)” 급여 신설 : 여성의 육아와 출산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족 급여 신설, 상시적 추가적인 여성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중소기업들에게 가임기 여성 고용 시 추가 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원(기간제 교사 채용의 사례 참조)
- 국공립 보육시설의 점진적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채납과 운영비 지원,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대
-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과 평가 인증제 연계, 퇴출 시스템 구축

- 학부모 운영위원 및 감독관 제도 도입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화
- 아동수당 지급
- 보육서비스 외에 다양한 육아 지원 현물 서비스 제공, 아동이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하는 형식으로 육아로 인한 추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
-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에 통합
- 궁극적으로는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와 기존의 둘째 아이부터 시작, 지급 범위 확대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규직화와 평가 인증 연계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준 인상

■ **이행 기간**

2017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 재정
- 아동수당에 대한 재정 추계(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 혁명』. 2007.)
- 매년 출생아 숫자 + 둘째 자녀부터 단계별 확대(예시)

단계	지원 대상	예산액(백만 원)
1단계	둘째 아 이상 5세 이하 하위 50% 지급	1,283,388
2단계	둘째 아 이상 11세 이하 하위 50% 지급	2,916,317
3단계	2단계 + 둘째 아 이상 5세 이하 전체 지급	4,199,705
4단계	둘째 아 이상 11세 이하 전체 지급	5,832,634

- 매년 신규 출생아부터 지급할 경우(예시)

연도	출생아 수	소요 예산(만원)
2010	471,171	56,540,520
2011	471,265	56,551,800
2012	484,550	58,146,000
2013	436,455	52,374,600
2014	435,435	52,252,200
계		275,865,120

- 보육교사 정규직화 등 타 사업은 추후산정
- 재원 조달방법 : 불필요한 토목과 건설 관련 예산 삭감으로 마련

아동수당

등록금완전후불제

◆ 정당 개요		접수번호	그 외-03
작성자	문모은	전화	
정당명	복지국가당	E-mail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등록금 수준 : 연간 700~1,000만원에 이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70% 이상이 등록금 마련 목적 -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 등 기존 제도들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사립대학들은 9조원 이상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중 - 연간 3.9조원의 정부의 학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사립대학 “퍼주기”의 형태가 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대학의 재정운용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소송 등 스스로 문제 개선에 나서는 상황임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낮추기 3R 플랜 마련 ○ 대학 사학 재단의 지배구조 민주화 ○ 등록금완전후불제와 학생 지원금 제도 실시 ○ 대학 행복 랭킹 추진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의 수준과 집행의 정상화 - 합리적인 예산 편성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통해 등록금 예산 및 결산의 심의 강화 * 대학의 재정과 결산 공개와 연동한 예산편성 모니터링 -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 대학 평가와 연동한 대학 직접 지원 * 서울시립대와 같이 지원금과 연동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금액을 낮추어 고지 * 대학 지원금은 전임교수 확보, 실험실습 및 도서관 장서 확보 등 대학의 질적 개선에만 투입하도록 규정 ○ 대학 사학 재단의 지배구조 민주화 : 직접 지원액과 연동한 공익이사 비율 확대 ○ 등록금완전후불제 - 학비, 생활비 등 학습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 대출 -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금 상환 <p>■ 이행 기간</p> <p>복지국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등록금 낮추기 플랜을 통해 등록금 인하 추진 - 이행 기간 동안 등록금은 등록금완전후불제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 경감 <p>■ 재원조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비용 - 등록금완전후불제 : 연간 5조 5천억원 * 연간 이자비용(10년만기 국고채 금리 3.2% 기준, 금리 인상 예상) : 2천 6백억원 * 미취업자 미상환비용 : 1조 5천억 원 * 반값등록금 국가지원 국가장학금 : 3조 9천억 원 - 등록금 낮추기 플랜 : 각 대학별 이월금 및 적립금 규모 조사 실시 후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추후 산정 - 기타사업 : 비예산 사업 ○ 재원조달방안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 마련 - 기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재정 투입 		

원·하청 공동책임제도

◆ 정당 개요		접수번호	그 외-04
작성자	문모은	전화	
정당명	복지국가당	E-mail	

◆ 청년정책 개요

정책내용	<p>■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불평등에 기인 - 대부분의 위험과 책임은 하청기업으로 전가되는 반면, 이익은 원청기업으로 집중 - 원청기업의 부당노동행위나 기타 불법노동행위로 인해 하청근로자의 권리 침해 -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 사이에 노동시간과 노동여건 등에 있어서 차별. 특히 임금상의 차별이 심각하고 4대보험이나 사내 복지 혜택 등에서도 차별이 생겨나 간접소득 상의 불평등도 고착화 - 하청기업이 파산되는 경우, 하청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 산업재해의 책임이 재정능력이 부족한 하청수급인에게 집중되어 재해당사자가 보호되지 않는 상황 발생 ○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청기업들은 점점 더 파견근로, 외주화, 사내하도급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이 시작됨 - 파견근로와 하도급은 파견 받은 기업과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이 부정되어, 파견 회사, 하청기업에게 노무관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형태임 - 원청기업은 파견근로, 외주화, 사내하도급의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06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은 파견근로, 외주화, 사내하도급 등을 통해 노무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노조의 협상을 회피하며 노조의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함 ○ 파견근로, 외주화, 사내하도급 등은 산업현장의 안전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하청근로자에게로 돌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임. ILOSTAT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십만인률(십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은 7.3으로 OECD 평균인 2.6보다 약 3배나 높음(박두용, 산업재해 예방-보상제도간 합리적인 연계방안, 2014). - 산업재해의 경우, 원청근로자 보다 하청근로자에서 2.53배 더 자주 발생했고, 자신의 소속 업체가 원청기업인지 하청기업인지를 몰랐던 노동자에게는 사고가 4.57배 더 잦았음(이들은 하청기업에 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이 더 높다고 추론 가능) - 우리나라 기업들은 값비싼 안전설비를 하는 것보다 사망자에게 보상비를 내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산재에 상대적으로 소극 - 정부통계는 산재보험 수혜자에 한정되므로 산업재해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비용의 하청기업으로의 전가와 사각지대 증가 - 산재보험법상 건설업 등에 있어서는 원청기업이 산재보험에 대한 책임이 있음. 다만,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에서, 하청기업이 산재보험을 책임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음. 현실에서는 원청기업이 계약을 할 때 산재보험을 하청업체가 맡도록 강요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은 고용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영세한 사업주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산재보험(고용주와 사용자)이 담당해야 할 부담들이 국민건강보험(모든 국민)으로 전가됨 -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진료책임을 부과함. 그러나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 보니,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어,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국민)에게 전가됨 - 산재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산재보험이 건강보험 보다 더 나은 서비스(휴업급여, 재발시 재치료, 재해보상과 연금 보장)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사용자와 고용주의 회유와 방해에 의해 건강보
------	---

험을 택하고 있음

■ **목표**

- 위험, 책임, 비용의 하청기업으로의 전가 방지
- 하청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 산재축소와 산재처리의 합리화
- 하청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 산재보험의 정상화와 건강보험으로의 비용 전가 방지

■ **이행방법**

-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 파견근로자나 도급관계를 통해 같은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를 작업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사용자 가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파견과 하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층적 사용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함
 -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수급인의 사업주책임과 더불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병존시켜야 함. 특히 기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함
 - 원청사업자를 중심으로 각 관련 사업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정보제공 및 조치확인 그리고 기록 의무를 원청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의 기본구조를 정립해야 함
 -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일부 개정해야 함
 - 노무관리의 공동책임체계 구축
 - 사용자사업자와 파견사업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노사교섭에 함께 참여
 - 노무관리비용의 공동부담
 - 하청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나 기타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 불법노동행위의 확대 및 철저한 적용
 -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함에 있어서 공동책임 부과
 - 하청기업 파산 시 체불임금 등에 대해 공동책임 부과
 - 하청기업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
 - 원청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산재사망 시 처벌, 산재 보상 등의 공동책임을 부과
 - 원청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정보의 제공,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수칙 등을 직접 책임지도록 함
 - 공동책임의 회피 정도에 의거하여 산재보험료 조정
 - 하청사업주에게 원청 작업장의 장소, 설비, 공정에 대한 권한 부여
 - 안전보건위원회의 정보제공 및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역할 강화
 - '작업중지권'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
 -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에 따르면,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장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음
 - 하청근로자의 안전보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조치, 즉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자체를 금지시켜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 확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로 의심되는 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비가 지급된 보험청구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를 조사하여 산재 미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하지만 산재은폐 적발 관련 전담 인력이 매우 모자란 상황임(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따라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함
- **이행기간**
2017년부터 적용
- **재원조달방안 등**
- 미예산 사업이므로 재원조달 불필요

2부: Open Table

〈청년이 느끼는 청년정책〉

Topic 1. 내겐 최고!

Topic 2. 내겐 최악!

Topic 3. 이걸 왜 없니?